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 이유

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노숙인 등 복지사업의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시기를 다음연도 1월 31일로 조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추진실적 평가 및 원활한 시행계획 수립을 도모하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평가를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,

질환의 특성에 따른 ‘군(群)’별로 구분되어 있는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·전파력·격리수준·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‘급(級)’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5534호, 2018.3.27. 공포, 2020.1.1. 시행)됨에 따라,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제1호 응급상황의 기준 및 범위를 현행 관련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노숙인 등 복지사업의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(제3조)

나.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가 노숙인 등에 대해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응급상황 중 중대한 질병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(제6조 제1항 제1호 개정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질병관리본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0. . . ~ . .)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심의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·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「결핵예방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결핵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·제3호·제4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·제2급감염병·제3급감염병, 동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제4급감염병 중 매독 및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각 호의 장애 등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죽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거나 위해(危害)를 끼칠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시행계획의 제출 등) ①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연도의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제출하여야 한다.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.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심의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·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	제3조(시행계획의 제출 등) ①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<u>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<u>제1항에 따른</u>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「사회보장기본법」 <u>제20조</u>에 따른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<u>제2항에 따른</u>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·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6조(응급상황 등)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응급상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 1. 「결핵예방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결핵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·제4호에 따른 제1군 감염병·제3군 감염병 및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각 호의 장애 등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죽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거나 위해(危害)를 끼칠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	제6조(응급상황 등)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응급상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 1. 「결핵예방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결핵, <u>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·제3호·제4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·제2급 감염병·제3급 감염병, 동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제4급 감염병 중 매독 및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각 호의 장애 등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죽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거나 위해(危害)를 끼칠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</u>
--	--